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474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27호, 2020.7.27)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일부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19054호, 2022. 11. 15. 공포, 2023. 6. 11. 시행) 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25호 2023. 6. 11. 시행)에서 위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신청 절차, 교육기관의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 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 : 044-201-3858,3859 / 메일: ajuno73@korea.kr /
팩스 : 044-201-5587